



음성출력용바

2014. 05. 23

서울가정법원

조정조서

사 건 [redacted] 이혼 및 친권자지정
 [redacted] (반소)이혼 등

원 고 [redacted]
 (반소 피고) 주소 [redacted]
 등록기준지 [redacted]
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산경 담당변호사 이소정

피 고 [redacted]
 (반소 원고)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
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
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명대경

사 건 본 인 [redacted]
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

판 사 [redacted] 기 일 : [redacted]
 법 원 주 사 보 [redacted] 장 소 : 제313호조정실
 공개 여부 : 공 개

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

원고(반소피고)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산경 담당변호사 이소정 각 출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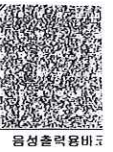
피고(반소원고) 및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명대경 각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-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와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이혼한다.
-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.





가. 피고는, 그 부친이 " [redacted] "(현재 비어 있음)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으로부터 부친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우리은행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(계좌번호 : [redacted], 차주명 : [redacted])을 모두 대위변제하기로 하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2014. 8. 31.까지는 이를 이행한다.

나. 원고는, 피고가 위 가.항과 같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위변제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한다.

다. 원고는 2014. 9. 30.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말일 각 5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 하되, 각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연 20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3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.

4.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씩을 이 조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
5. 가. 원고는 이 조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 접교섭할 수 있다.

(1) 매월 2회, 둘째주 및 넷째주 토요일 14:00부터 일요일 18:00까지

(2) 여름,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7일간 (단,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한 이후 부터 한다)

(3)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되며,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6.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하고,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
7. 원고 및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.





8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의 표 시

본소 청구취지

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반소 청구취지

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4,000만 원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.

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

원고와 피고는 2004. 9. 8.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의 부부인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.

법 원 주 사 보 손 선 화



판 사 김 형 른



※ 이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신고의무자(원고)는 가까운 구청, 시청, 읍(면)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를 게을리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단, 가족관계등록신고시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.)





음성출력용바

정본입니다.

2014. 5. 23.

서울가정법원

법원주사보 손선화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